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갱신)」 신청 접수 공고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갱신)」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28.

경기도지사

1. “경기도 지역서점인증제” 란?

경기도 관내 서점으로 실제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에 대하여 경기도가 정한 심사규정을 충족할 경우 ‘경기도 지역서점’임을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

2. 인증 요건(규칙 제3조) 및 세부 기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요건과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에서 정한 세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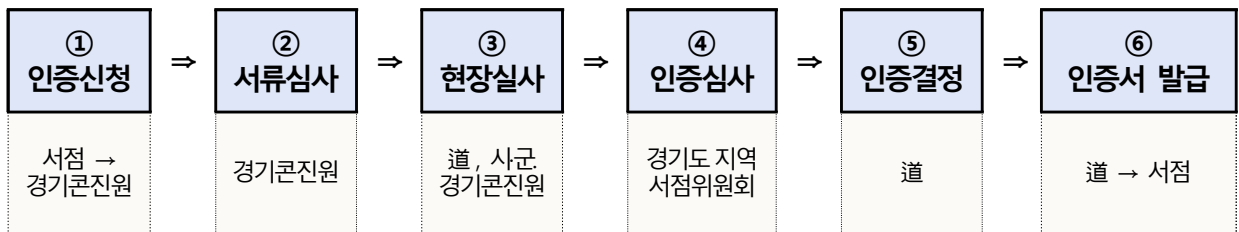
1) 인증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경기도 내 서점으로 실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것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 경기도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 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2)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 세부 심사 기준

- 월 30시간 이상, 규칙적인 영업시간을 갖고 영업하는 서점일 것
- 공간 구성 기준으로 책 판매가 주된 업종일 것
(타 업종과 융복합되어 서적 등을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서점으로서의 기능이 더 우선되어야 함)
- 매장 내에 단행본을 일정 규모 비치하고, 꾸준한 판매 실적이 있을 것

3. 인증절차



- 1) 인증신청(서점) :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접수
- 2) 서류심사 : 인증 신청 자격 등 확인
- 3) 현장실사 : 인증 신규 신청 서점은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갱신 신청 서점은 시·군에서 현장 실사 실시
- 4) 인증심사(위원회) : 신청서류 및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인증요건 및 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적격/부적격 판단
- 5) 인증결정(도) : 위원회 의결로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갱신)' 결정
- 6) 인증서 발급(도→서점) : 인증서 교부

4. 인증효과(혜택)

- 1)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교부
- 2) 홍보/경영 컨설팅, 교육, 마케팅, 문화 활동 등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 3) 도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시 인증 지역서점 우선 활용 권고

5. 인증 유효기간 : 신규 인증 후 2년(2년마다 갱신 심사)

- 유효 기간 중 폐업되었거나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 기준에 미달(미충족) 또는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을 포기할 경우는 인증 취소

6. 인증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3.7.28.(금) ~ 8.16.(수) 18:00까지

2) 제출서류 : 아래 서류 모두 구비

- ① 인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붙임1, 붙임2)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갱신서점일 경우) 기존 인증서 사본
- ④ 매출 증빙자료(아래 사항이 모두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 최근 3개월 간 **월별** 매출 내역(카드매출 내역서, 현금영수증 및 계산서 발행내역 등)
 - 최근 1개월 간 **일별** 매출 내역(카드매출 내역서, 현금영수증 및 계산서 발행내역 등)
 - 최근 3개월 간 신용카드 결제 **건별** 내역
- ⑤ 도서입고 내역서(접수일 기준 3개월분)
- ⑥ 서점 내 문화활동, 네트워크/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내역(해당사항 있을 시)
- ⑦ 매장 외부, 내부사진 각 1매 이상(최근 3개월 이내 사진)

3) 접수처 및 접수방법

접수처	담당자	접수방법
경기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팀	조희영 매니저 (032-623-8049)	*접수전용 메일주소 (book@gcon.or.kr)

※ 접수 시 모든 제출서류를 한개 폴더에 담아, 파일명 '서점명.zip'으로 제출 바랍니다.